

제12423호

관

보

1993. 5. 25. (화요일)

○관세청고시제1993-793호

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간이징액 환급율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1993년 5월25일

관 세 청 장

간이징액환급율표개정

간이징액환급율표(관세청고시 제1993-771호)중 동율표의 적용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.

1. 적용대상중 "가"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이 표는 수출면장 또는 수출면장에 갈음하는 서류상의 총금액(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발급신청시에는 내국신용장등 국내거래 서류상의 총금액)이 FOB기준 미화 10만달러 이하이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전년도 총 환급실적(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을 포함한다)이 5,000만원 이하인 자가 제조한 수출 물품중(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)에만 적용한다.

4. 비적용 및 적용신청의 "나"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종전 소재수출간이징액환급율표(관세청고시 제87-495호, 제88-524호, 제88-537호, 제89-564호, 제89-602호, 제90-618호, 제91-676호, 제91-707호, 제92-714호 및 제93-771호)의 적용대상물품에 대하여 간이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는 이 표에 계기된 수출물품에 대하여도 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5. 행정 지시사항중 "가호의 (2)"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호의 (2). 전년도 총 환급실적(기납증발급실적 포함)이 5,000만원 이하인지 여부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2. (적용시기) 이 고시는 1993년 5월18일 이후 환급(기납증)신청할 수출물품등에 적용한다.

○공주영림서고시제1993-5호

산림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채종림을 변경 고시합니다.

1993년 5월25일

공주영림서장

1. 지정번호 : 충청북도에서 지정 관리하던 채종림(충북 지정번호 제3호)을 공주영림서 채종림 지정번호 제1호로 변경고시함.

2. 소재지 :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산24
3. 소유자의 주소, 성명 : 국(산림청)
4. 수 종 : 낙엽송, 수량 : 22년, 수고 : 16m, 흉고 지경 : 19cm
5. 본 수 : 36,000본
6. 구역면적 : 30ha
7. 지정변경년월일 : 1993년 4월30일
8. 관리자 : 공주영림서중주관리소장
9. 지정기간 : 고시일로부터 10년

○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1993-7호

교통부공고 제6호('88. 4. 1.)에 의거 공고된 김포국제공항을 개정된 항공법(법률 제4,435호, '91. 12.14.)제2조, 제76조, 제78조 및 제111조에 따라 김포국제공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1993년 5월25일

서울지방항공청장

1. 비행장의 명칭 : 김포국제공항
2. 위 치
 - 표 점 : 북위 37°33'15", 동경 126°47'59"
 - 표점의 표고 : 해발 17.70m
 - 행정구역
 -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, 개화동, 방화동, 과해동, 내발산동, 오곡동, 오쇠동 일대
 - 인천직할시 북구 동양동, 상야동, 하야동, 전호동, 굴현동 일대
 -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1동 일대
3. 관리청 : 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
4. 고시의 목적 : 항공법 개정으로 김포국제공항의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설치를 제한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도모코자 함.
5. 착륙대(기본표면)
 - 14L-32R 활주로의 착륙대는 북위 37°34'09.129" 동경 126°46'51.987"의 지점과 북위 37°34'02.249" 동경 126°46'43.340"의 지점과 북위 37°32'43.762" 동경 126°48'39.125"의 지점과 북위 37°32'36.884" 동경 126°48'30.478"의 지점으로 구성되는 지표면상의 길이 3,720m, 폭 300m 직사각형 평면임.
 - 14R-32L 활주로의 착륙대는 북위 37°34'00.873" 동경 126°46'41.610"의 지점과 북위 37°33'53.994" 동경 126°46'32.963"의 지점과

제12423호

관

보

1993. 5. 25. (화요일)

<p>북위 37°32'44.689" 동경 126°48'17.231"의 지점과</p>	<p>북위 37°32'37.811" 동경 126°48'08.584"의 지점으로 구성되는 지표면상의 길이 3,320m, 폭 300m의 직사각형 평면임.</p>								
<p>6. 진입구역</p>									
구	분	진	입	구	분	진	입	표	면
14L	북위 37°34'09.129", 동경 126°46'51.987"의 지점과 북위 37°34'02.249", 동경 126°46'43.340"의 지점과 북위 37°40'44.726", 동경 126°40'44.159"의 지점 및 북위 37°38'54.515", 동경 126°38'25.799"의 지점으로 구성되는 사다리꼴 평면	진입표면은 32L-14R 및 32R-14L 활주로 착륙대의 단변에서 3,000m까지는 50분의 1 구배로 3,000m부터 15,000m까지는 40분의1 구배로 진입 구역 범위내에서 구성하는 표면임.		14R	북위 37°34'00.873", 동경 126°46'41.610"의 지점과 북위 37°33'53.994", 동경 126°46'32.963"의 지점과 북위 37°40'36.462", 동경 126°40'33.778"의 지점 및 북위 37°38'46.247", 동경 126°38'15.427"의 지점으로 구성되는 사다리꼴 평면	착륙대 단변표고 14L : 11.43m 14R : 10.50m 32L : 12.50m 32R : 12.86m		32R	북위 37°32'43.762", 동경 126°48'39.125"의 지점과 북위 37°32'36.884", 동경 126°48'30.478"의 지점과 북위 37°27'50.771", 동경 126°56'55.317"의 지점 및 북위 37°26'00.871", 동경 126°54'36.955"의 지점으로 구성되는 사다리꼴 평면
32L	북위 37°32'44.689", 동경 126°48'17.231"의 지점과 북위 37°32'37.811", 동경 126°48'08.584"의 지점과 북위 37°27'51.724", 동경 126°56'33.448"의 지점 및 북위 37°26'01.817", 동경 126°54'15.095"의 지점으로 구성되는 사다리꼴 평면								
7. 수평표면		<p>북위 37°34'05.689" 동경 126°46'47.663" 지점과 북위 37°33'57.434" 동경 126°46'37.287" 지점과 북위 37°32'40.323" 동경 126°48'34.801" 지점 및 북위 37°32'41.250" 동경 126°48'12.908" 지점을 각각 반경 4,000m의 원호들과 그 접선으로 이루어진 표면으로써 해발고도 57.86m의 수평한 표면</p>							
8. 원추표면 : 수평표면의 외측경계선(해발고도 57.86m)으로부터 외측상방 20분의 1의 경사도와 1,100m 수평거리(해발고도 112.86m)까지 연장한 표면		<p>- 활주로 32L MALS, 활주로 중심선등</p> <p>- 활주로 32R M/M, I/M, G/P, LOC/DME 활주로 중심선등, 접지대등 및 ALS</p> <p>- 기타 RADAR, ASDE, TVOR/DME, RVR, PAPI</p>							
9. 전이표면 : 기본표면의 긴변과 진입표면의 경사면에서 외측상방 7분의 1의 경사도로 수평표면과 접하는 해발고도 57.86m까지의 표면		11. 포장장도							
10. 항공보안시설		<p>- 신활주로 : PCN 100/F/C/W/T</p> <p>- 구활주로 : PCN 100/F/C/W/T</p> <p>12. 공용개시일 : 1988년 4월 1일</p> <p>13. 기타 참고사항</p> <p>- 항공용어 : 항공법 제2조 참조</p> <p>- 관련기관 : 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</p> <p>- 진입표면, 수평표면, 원추표면 및 전이표면등의 상부로 들출되는 장애시설물은 항공법 제82조에 의거 설치가 제한됨(단, 동법시행규칙 제246조에 의한 물건제한의 특례가 있음을 참고)</p> <p>- 장애여부는 서울특별시, 인천직할시, 부천시, 광명시, 고양시 및 김포군에서 확인할 수 있음.</p>							